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6. 8 선고 2022가단2194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윤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휴

변 론 종 결 2023. 5. 18.

판 결 선 고 2023. 6. 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22. 체결된 30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원고는 2018. 6. 14. D투자조합에 300,000,000원을 출자하였다.
- C는 2018. 6. 14.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300,000,000원에 대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월 2%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(작성한 문건을 이하 ‘이 사건 자필증서’라 한다)하여 교부하였다.
- C는 2018. 6. 22.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300,000,000원의 은행 내지 E조합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하였다.
- C는 2019. 3. 8. 원고에게 이행각서(이하 ‘이 사건 이행각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C는 D투자조합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원고에게 C가 투자원금 300,000,000원 및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%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C가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가입하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조합원으로 2018. 6. 14. 60좌 금 300,000,000원을 D투자조합에 가입하고 출자하였는바, 원고의 출자금 300,000,000원 및 투자수익금(매월 투자원금의 2%)에 대하여 D투자조합과 연대하여 2019. 3. 25.까지 전액 반환하겠으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원고에게 민,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C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% 수익을 C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가 2018 6. 14. D투자조합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, 그렇다면 이 사건 자필증서는 C가 원고에게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% 수익을

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,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2018. 6. 22. 이 사건 증여 전 이 사건 자필증서 작성시인 2018. 6. 14.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가 무자력이었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 또한 이 사건 증여는 C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C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 금액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박남준